

## 핵무기 금지조약

李承茂 ( 이스눔 ) 訳 ( 韓日反核平和連帯実行委員 )

이 조약의 당사국들은 다음의 입장과 인식을 같이 한다:

-국제연합 헌장의 목적과 원칙들의 실현에 공헌하기로 결심한다.

-핵무기의 어떠한 사용에서라도 나오게 될 인도적 견지의 파국적인 결과에 깊이 우려하며, 따라 그러한 무기들을 완전히 제거할 필요가 있음을 인식하며 이는 핵무기가 어떤 상황에서도 다시 결코 사용되지 않도록 보장하는 유일한 길임에 변함 없다.

-핵무기의 계속 존재로 야기되는 위험을 염려하며 ,이에는 사고, 계산착오나 설계상의 문제에 의해 발생하는 핵무기 폭발에서 오는 위험을 포함한다. 그리고 이 위험들이 온 인류의 안보에 관련되고 모든 국가가 핵무기의 어떠한 사용이라도 이를 방지해야 할 책임을 공유한다는

-핵무기의 파국적 결과들은 적절히 대처가 될 수 없고, 국경을 초월하며 인류 생존, 환경, 사회경제 발전, 지구 전체의 경제, 식량 안보 그리고 현 세대와 미래세대의 건강에 심각한 문제가 초래되며 전리방사선의 결과로 인한 것을 포함하여 특히 여성과 소녀들에게 악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인식한다.

-핵무장 해제의 윤리적 절대명령과 핵무기 없는 세계를 달성하고 유지할 긴급성을 인정한다. 이는 국가 안보와 집단 안보상의 이익 모두에 기여하는 최고 수준의 지구 전체적 공공선이다.

-핵무기 사용 피해자들(피폭자들), 그리고 핵무기 실험에 영향받은 자들에게 야기된 손해의 수용할 수 없는 고통에 대해 우려한다.

-미치는 핵무기 관련 활동이 토착 민족들에게 부당한 악영향을 미치는 것을 인식한다.

-모든 국가가 국제적 인도적 법과 국제적 인권 법을 포함한 적용 가능한 법을 언제나 준수

할 필요성을 다시금 언명한다.

-국제적 인도적 법의 원칙들과 규정들, 특히 무장 분쟁 당사자들이 교전 방법이나 수단을 선택할 권리가 무제한이 아니라는 원칙, 구별의 규정, 무차별 공격의 금지, 공격에서의 비례성과 사전예방의 규정, 과도한 손해나 불필요한 고통을 야기하는 성질의 무기 사용의 금지, 자연환경 보호의 규정들에 근거를 둔다.

-핵무기의 어떠한 사용도 무장 분쟁에서 적용이 가능한 국제법의 규정들, 특히 국제적 인도적 법의 원칙들과 규정들에 상반된다는 것을 감안한다.

-핵무기의 어떠한 사용도 인간의 여러 원칙들 그리고 공공 양심의 명령들에도 혐오스러운 것임을 다시금 언명한다.

-국제연합 헌장에 따라 여러 국가는 국제관계에서 어느 국가이든 그 국가의 영토적 온전함이나 정치적 자주성에 반대하여 위협하거나 힘을 사용하는 것, 혹은 국제연합의 목적과 어긋나는 어떠한 방식이든 이를 삼가야 함을 상기하도록 한다. 국제 평화와 안보의 확립과 유지는 세계의 인적 경제적 자원을 준비를 위해 할애하는 것을 최소한으로 하여 촉진되어야 함을 상기하도록 한다.

-또한 국제연합 총회의 1946년 1월 24일 채택된 최초 결의와 그 후의 결의들을 핵무기 제거를 요구하는 결의들로서 상기하도록 한다.

-핵무장 해제의 느린 진도, 군사적 안보상의 개념들, 교리들 정책들에서의 핵무기에 대한 계속되는 의존성, 핵무기의 생산, 유지 및 현대화를 위한 프로그램에 경제적 인적 자원들이 낭비되는 것에 우려를 가진다.

-법적 구속력 있는 핵무기 금지는 불가역적이고 입증 가능하고 투명한 핵무기 제거를 포함한 핵무기 없는 세계의 달성과 유지를 향한 중요한 공헌이 됨을 인식하고, 이 목표를 향해 행동하기로 결심한다.

-엄격하고 실효성 있는 국제적 감시 하에서 총체적이고 완벽한 무장해제를 향한 실질적 진

보를 달성하려는 목적으로 행동하기로 결심한다.

-선한 신념을 가지고 모든 면에서 엄격하고 실효성 있는 국제적 감시 하에서의 핵 무장해제로 가는 협상들을 추구해 가고 결론을 맺을 할 의무가 존재함을 다시금 언명한다.

-또한 핵무기 비확산 조약의 완전한 실질적인 실행은 핵 무장해제와 비확산 체제의 주춧돌 역할을 하는 것으로 국제 평화와 안보를 촉진하는 데서 담당해야 할 핵심적 역할을 가진다는 것을 다시금 언명한다.

-포괄적 핵실험 금지 조약 그리고 그것의 입증 체제가 가지는 핵 무장해제와 비확산 체제의 핵심 요소로서의 사활적 중요성을 인식한다.

-관련 지역 국가들 간에 자유로 도달된 장치들을 기초로 한 국제적으로 인정되는 비핵지대의 설정이 지구 전체적 지역적 평화와 안보를 향상시키고 핵 비확산 체제를 강화하며 핵 무장해제의 목표를 실현하는 것에 공헌한다는 신념을 다시금 언명한다.

-본 조약의 어느 것도 차별 없이 평화적 목적에서 핵 에너지의 연구, 생산 및 사용을 개발 할 당사국들의 불가침의 권리에 저촉하는 것으로 해석되어서는 안 됨을 강조한다.

-여성과 남성 모두의 평등하고 완전하고 실질적인 참여는 지속가능한 평화와 안보의 촉진과 달성을 위한 필수 요인임을 인식하고 핵 무장해제에 여성의 실질적 참여를 지원하고 강화하기로 다짐한다.

-또한 평화와 군축 교육의 그 모든 면에서의 중요성과 그리고 현세대, 미래세대를 위한 핵 무기의 위험성과 결과들에 대한 의식 제고의 중요성을 인식하며 본 조약의 원칙들과 규범들을 확산하기로 다짐한다.

-핵무기의 완전한 제거의 요청으로 명백해지는 인간 원칙들의 증진에서의 공공 양심의 역할을 강조하고, 국제연합, 국제 적십자와 적신월 운동, 기타 국제적 지역적 기구들, 비정부 기구들, 종교 지도자들, 의원들, 학계, 그리고 피폭자들이 취하는 그 목표를 향한 노력들이 있음을 인식한다.

우리는 다음에 합의했다.

#### 제1조 금지

1. 각 당사국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다음에 착수하지 않는다.

- (a) 핵무기나 그밖의 핵폭발장치를 개발, 실험, 생산, 제조 다른 식으로 취득, 가공 혹은 비축하는 행위
- (b) 어떤 핵무기나 그밖의 핵 폭발장치이든 이를 어떠한 인수자에게 전달하거나 그런 핵무기 혹은 폭발장치에 대한 통제수단을 직간접으로 전달하는 행위
- (c) 핵무기나 그밖의 핵 폭발장치의 전달이나 이에 대한 통제수단을 직간접으로 인수하는 행위
- (d) 핵무기나 그밖의 핵 폭발 장치를 사용하거나 사용 위협을 하는 행위
- (e) 이 조약에서 당사국에 금지된 어떠한 활동에든 이에 가담하도록 어느 누구에게든 어떤 식으로든 지원하거나 권장하거나 유도하는 행위
- (f) 이 조약에서 당사국에 금지된 어떠한 활동에든 이에 가담하는 어느 누구로부터이든지 어떤 식으로든 지원을 구하거나 받아들이는 행위
- (g) 그 영토 내 혹은 그 사법관할이나 통제 영역 내의 어느 장소에서든 어떠한 핵무기나 그밖의 핵 폭발 장치의 어떠한 배치, 설치 혹은 전개이든 이를 허가하는 행위

#### 제2조 신고

1. 각 당사국은 국제연합 사무총장에게 본 조약이 당사국에 발효되고 30일이 지나기 전에 다음을 신고하도록 한다.

(a) 핵무기나 핵 폭발장치를 소유, 보유 혹은 통제했는지, 그리고 당사국의 핵무기 프로그램을 모든 핵무기 관련 시설의 제거나 불가역적 전환을 포함하여 제거했는지의 여부

(b) 제1조 (a)에도 불구하고 어떠한 핵무기나 그밖의 핵 폭발장치이든 이를 소유, 보유 혹은 통제하는지의 여부

(c) 제1조(g)에도 불구하고 그 영토 내 혹은 다른 국가가 소유, 보유 혹은 통제하는 그 당사국의 사법관할 이나 통제 하에 있는 어느 장소에서든 핵무기나 그밖의 핵폭발 장치가 있는지의 여부

2. 국제연합 사무총장은 접수한 그 모든 신고사항들을 당사국들에 전달하도록 한다.

### 제3조 보호조치

1. 제4조 1항이나 2항이 적용되지 않는 각 당사국은 장치 채택할 수 있는 어떠한 추가적 유관 수단들도 침해함이 없이 최소한 국제원자력기구의 보호조치 의무를 본 조약 효력 발생시점에 효력을 유지해야 한다.

2. 제4조 1항이나 2항이 적용되지 않는 당사국으로서 아직 그렇게 하지 않은 당사국은 국제원자력기구와 포괄적 보호조치 협정을 체결하고 효력을 발생시키도록 한다(INFCIRC/153 (Corrected)). 그러한 협정의 교섭은 해당 당사국이 본 조약의 효력을 발생시킨 후 180일 내에 시작하도록 한다. 협정은 해당 당사국이 본 조약의 효력 발생 후 18개월 안에 효력을 발생시키도록 한다. 각 당사국은 장래에 채택할 수 있는 어떠한 추가적인 유관 수단들도 침해 없이 그러한 의무들을 이후 유지하도록 한다.

### 제4조 핵무기의 완전한 제거를 향하여

1. 2017년 7월 7일 이후 핵무기나 그밖의 핵 폭발 장치들을 소유, 보유 혹은 통제했고 모든 핵무기 관련 시설의 제거 혹은 불가역적 전환을 포함하여 해당국이 본 조약의 효력발생에

들어가기 전 그 핵무기 프로그램을 제거한 각 당사국은 그 핵무기 프로그램의 불가역적 제거의 목적으로 본조 6항에 따라 지정된 유자격한 국제기관과 협력하도록 한다. 유자격한 국제기관은 당사국들에 보고하도록 한다. 그러한 당사국은 해당 국에서 전체적으로 신고된 핵물질을 평화로운 핵 활동으로부터 전용하지 않음과 신고되지 않은 핵 물질이나 활동이 부재함에 대한 신뢰성 있는 보장을 하는 데 충분한 보호조치 협정을 국제원자력기구와 체결하도록 한다. 그러한 협정의 교섭은 해당 당사국에서 본 조약이 효력을 발생한 후 180일 내에 시작하도록 한다. 그 협정은 해당 당사국에서 본 조약이 효력을 발생한 후 18개월 내에 효력을 발생하도록 한다. 해당 당사국은 이후로 최소한 해당국이 장래에 채택할 수 있는 어떠한 추가적 유관 수단들에도 저촉됨 없이 보호조치 의무들을 유지하도록 한다.

2. 제1조 (a)에도 불구하고 핵무기를 소유, 보유 혹은 통제하는 각 당사국은 즉시 이를 가동 상태에서 제거하도록 하며 가능한 신속히 이를 파괴하지만, 모든 핵무기 관련 시설의 제거나 불가역적 전환을 포함하여 법적 구속력 있고 시한이 정해진 당사국 핵무기 프로그램의 입증되고 불가역적인 제거를 위한 계획에 따라 당사국들의 최초 회합에서 정해질 기한을 넘겨서는 안 된다. 당사국은 본 조약의 효력 발생 후 60일 내에 이 계획을 당사국들에 혹은 당사국들에 의해 지정된 유자격한 국제기관에 제출하도록 한다. 이에 따라 그 계획은 유자격 국제 기관과 교섭이 되고, 이 기관은 이를 당사국의 차후 최초 개최되는 회합 혹은 검토 회의에 제출하여 그 절차 규정들에 따라 승인을 받도록 한다.

3. 위 2항이 적용되는 각 당사국은 국제원자력 기구와 신고된 핵물질의 평화로운 핵 활동으로부터의 불전용과 신고되지 않은 핵물질의 해당국 전체에서의 부재에 대한 신뢰성 있는 보장을 제공하는 데 충분한 보호조치 협정을 체결하도록 한다. 그러한 협정의 교섭은 2항에서 언급한 계획의 실행이 완료된 일자 이전에 시작하도록 한다. 그 협정은 교섭의 시작 후 18개월 내에 효력을 발생하도록 한다. 해당 당사국은 이후로 최소한 해당국이 장래에 채택할 수 있는 어떠한 추가적 유관 수단들에도 저촉됨 없이 보호조치 의무들을 유지하도록 한다.

본 항에서 언급한 협정의 효력 발생에 따라 당사국은 국제연합 사무총장에게 본 조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였음에 대한 최종 신고를 제출하도록 한다.

4. 제1조 (b)와 (g)에도 불구하고 그 영토 내에 속은 타국에 의해 소유, 보유 혹은 통제되는 그 사법관할 혹은 통제 하의 어떤 장소에서든 어떠한 핵무기나 그밖의 핵 폭발 장치라도 가지는 각 당사국은 가능한 속히 그러한 무기의 즉각적 제거를 보장하도록 하되, 당사국의 최초 회합에서 정하는 시한 내에 하도록 한다. 그러한 무기나 그밖의 폭발 장치의 제거시에 당사국은 국제연합 사무총장에게 본 조에 따른 의무들을 이행했음에 대한 신고를 제출하도록 한다.

5. 본조가 적용되는 각 당사국은 당사국 회합마다 그리고 검토 회의마다 본 조에 따른 의무들이 이행될 때까지 그 이행을 향해 행해진 진도에 관한 보고를 제출하도록 한다.

6. 당사국들은 본조 1, 2 및 3항에 따른 모든 핵무기 관련 시설의 제거 혹은 불가역적 전환을 포함하여 핵무기 프로그램의 불가역적 제거를 교섭하고 입증하기 위해 유자격한 국제 기관이나 기관들을 지정하도록 한다. 그러한 지정이 본 조의 1항이나 2항이 적용되는 당사국에서 본 조약이 효력발생을 하기 전에 행해지지 않은 경우, 국제연합 사무총장은 필요할 수 있는 어떠한 의사결정이든 이를 취하도록 당사국들의 특별 회합을 소집하도록 한다.

#### 제5조 국별 이행

1. 각 당사국은 본 조약에 따른 의무들을 이행하는 데 필요한 조치들을 채택하도록 한다.
2. 각 당사국은 본 조약에 따라 당사국에 금지되는 그 사법관할이나 통제 하의 인원들에 의해 혹은 그 영토에서 취해진 어떠한 활동이든 이를 방지하고 억제하기 위해 형법적 이행강제의 부과를 포함하여 모든 적절한 법적, 행정적, 기타 조치들을 취하도록 한다.

#### 제6조 피해자 원조와 환경복구

1. 각 당사국은 핵무기의 사용이나 실험에 의해 영향받는 그 사법관할 내의 개인들에 관하여 적용 가능한 국제적 인도적 법과 인권법에 따라 의료, 재활, 심리적 지원을 포함하여 차별 없이 연령 및 성별로 민감한 원조를 적절히 제공하고, 그들의 사회적 경제적 포용을 제 공하도록 한다.
2. 각 당사국은 핵무기나 그밖의 핵 폭발장치의 실험이나 사용에 관련된 활동의 결과로서 오염된 그 사법관할이나 통제 하의 영역에 관하여 그렇게 오염된 영역의 환경복원을 행한 필요하고도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한다.
3. 위의 1, 2항에 따른 의무들은 국제법이나 쌍무적 협정들에 따른 다른 어떤 국가들의 의무 들에도 침해함이 없도록 한다.

#### 제7조 국제협력과 원조

1. 각당사국은 본 조약의 실행을 촉진하기 위해 다른 당사국들과 협력하도록 한다.
2. 본 조약에 따른 의무들을 이행하는 데서 각 당사국은 가능한 경우 다른 당사국들로부터 원조를 구하고 받을 권리를 가진다.
3. 그렇게 할 위치에 있는 각 당사국은 본 조약의 이행을 촉진하도록 핵무기의 사용이나 실험에 의해 영향 받은 당사국들에 기술적, 물질적, 재정적 원조를 하도록 한다.
4. 그렇게 할 위치에 있는 각 당사국은 핵무기나 그밖의 핵 폭발 장치의 사용이나 실험의 피해자들을 위한 원조를 제공하도록 한다.
5. 본 조에 따른 원조는 그중에서도 국제연합 시스템, 국제적, 지역적 혹은 민족적 조직들이 나 제도들, 비정부 기구나 기관들, 국제 적십자 위원회, 국제 적십자 연맹과 적신월사들 혹은 민족적 적십자사와 적신월사들을 통해서 혹은 쌍무적 토대에서 제공될 수 있다.
6. 국제법에 따라 가질 수 있는 다른 어떤 의무도 침해함 없이 핵무기나 다른 어떤 핵폭발 장치를 사용하거나 실험한 당사국은 피해자 원조와 환경복원을 목적으로 영향받은 당사국들

에 적절한 원조를 제공할 책임을 지도록 한다.

#### 제8조 당사국 회합

1. 당사국들은 본 조약의 유관 규정에 따라 그리고 다음을 포함하여 핵 무장해제를 위한 추가 조치들에 관해 본 조약의 적용이나 이행에 관련되는 어떤 문제에 대해서든 고려하고 필요한 경우 의사결정을 하기 위해 정기적으로 모이도록 한다.

(a) 본 조약의 이행과 지위

(b) 본 조약에 대한 추가적 프로토콜들을 포함하여 핵 무기 프로그램의 입증된, 시한이 정해지고 불가역적인 제거를 위한 조치들

(c) 본조약의 규정들에 따른 그리고 이와 일관성을 가지는 다른 임의의 문제들

2. 당사국들의 최초 회합은 본 조약의 효력 발생 후 1년 안에 국제연합 사무총장에 의해 소집되도록 한다. 당사국들의 그 이상의 계속 회합들은 당사국들에 의해 달리 합의되지 않는다면 격년으로 국제연합 사무총장에 의해 소집되도록 한다. 당사국들의 회합은 그 첫번 회기에 절차상의 규정들을 채택하도록 한다. 그것들의 채택이 있기까지 핵무기 금지를 위한 법적 구속력 있는 수단을 교섭하여 그 총체적 제거에 이르도록 하는 국제연합 회의 절차 규정들이 적용되도록 한다.

3. 당사국들의 특별 회합은 필요하다고 여겨지면 국제연합 사무총장에 의해 어떠한 당사국의 서면 요청에 의해서도 이 요청이 적어도 당사국 3분의 1의 지지를 받는 조건에서 소집되도록 한다.

4. 본 조약의 효력 발생 후 5년이 지나면 국제연합 사무총장은 조약의 작동과 본조약의 목적 달성에서의 진도를 검토하기 위한 회의를 소집하도록 한다. 국제연합 사무총장은 당사국들에 의해 달리 합의되지 않은 경우 같은 목적을 가지고 6년의 간격으로 계속적인 검토 회의를 소집하도록 한다.

5. 본 조약의 비 당사국들과 국제연합 시스템의 유관 법인들, 기타 유관 국제 조직 및 기구들, 지역 조직들, 국제 적십자 위원회, 국제 적십자 연맹과 적신월사들 그리고 유관 비정부 기구들은 당사국 회합과 검토 회의들에 참관자들로써 참가하도록 초청받도록 한다.

#### 제9조 비용

1. 당사국 회합, 검토 회의 당사국 특별 회합의 비용은 당사국들 그리고 거기 참관인으로 참가하는 본 조약 비당사국들이 적절히 조정된 국제연합의 산정 규모에 따라 부담하도록 한다.

2. 제2조에 따른 신고, 제4조 그리고 본 조약 10조에 따른 제안된 개정안을 유포하는 데 국제연합 사무총장이 초래한 비용은 국제연합의 적절하게 조정된 산정 규모에 따라 당사국들이 부담하도록 한다.

3. 제4조에 따라 필요한 검증 조치들의 이행 관련 비용 그리고 모든 핵무기 관련 시설들의 제거나 전환을 포함하여 핵무기나 그밖의 핵 폭발장치의 파괴, 핵무기 프로그램의 제거에 관련된 비용은 해당되는 당사국들이 부담해야 한다.

#### 제10조 개정

1. 본 조약의 효력 발생 후 언제든지 어느 당사국이라도 조약 개정을 제안할 수 있다. 제안된 개정안 본문은 국제연합 사무총장에게 통보하도록 하고, 사무총장은 이를 모든 당사국에 배포하고 그 제안을 검토할지에 관하여 그들의 의견을 구하도록 한다. 당사국 과반수가 국제연합 사무총장에게 그 배포 후 90일 내에 그 제안에 대한 계속적 검토를 지지한다고 통보하면 그 제안은 차후 최초의 당사국 회합이나 검토 회의에서 검토하도록 한다.

2. 당사국 회합이나 검토 회의는 당사국 3분의 2의 다수의 찬성표로 채택될 개정안에 합의할 수 있다. 그 보관소는 어떤 개정안이 채택되든 이를 모든 당사국에 통보하도록 한다.

3. 개정안은 그 채택시에 과반수의 당사국이 그 비준서나 수용서를 기탁한 후 90일 동안 그 비준서나 수용서를 기탁하는 각 당사국에게 효력발생에 들어간다. 그 후 다른 어느 당사국에 대해서도 그 개정안의 비준서나 수용서의 기탁 후 90일이 지나면 효력발생에 들어간다.

#### 제11조 분쟁 조정

1. 본 조약의 해석이나 적용에 관련하여 둘 이상의 당사국 간에 분쟁이 발생할 때에는 관련 당사국들은 교섭에 의해 혹은 국제연합 헌장 제33조에 따른 당사국들이 선택하는 다른 평화적 수단에 의해 분쟁의 해결을 목적으로 함께 상의하도록 한다.

2. 당사국들의 회합은 주선을 해 주고, 관련 당사국들이 그들의 선택하는 조정 절차를 시작하도록 촉구하고 본 조약과 국제연합 헌장의 관련 조항에 따라 합의된 어떠한 절차에 대해서도 시한을 권하는 것을 포함하여 분쟁의 조정에 공헌할 수 있다.

#### 제12조 보편성

각 당사국은 본 조약에 모든 국가가 보편적으로 가입하도록 할 목적을 가지고 본 조약의 비 당사국들이 본 조약에 서명, 비준, 수용, 찬성 혹은 가입하도록 권고하도록 한다.

#### 제13조 서명

본 조약은 2017년 9월 20일 뉴욕의 국제연합 본부에서 모든 국가에 서명을 위해 개방하도록 한다.

#### 제14조 비준, 수용, 찬성 혹은 가입

본 조약은 서명국들에 의한 비준, 수용 혹은 찬동을 받도록 한다. 조약은 가입하도록 개방된다.

#### 제15조 효력발생

1. 본 조약은 50번째의 비준서, 수용서, 찬동서 혹은 가입서가 기탁된 후 90일이 지나면 효력발생을 한다.
2. 50번째의 비준서, 수용서, 찬동서 혹은 가입서 기탁 일자 후 그 비준서, 수용서, 찬동서 혹은 가입서를 기탁하는 어느 국가에 대해서도 본 조약은 그 국가가 그 비준서, 수용서, 찬동서 혹은 가입서를 기탁한 일자 후 90일이 지나면 효력을 발생한다.

#### 제16조 유보조항

본 조약의 조항들은 유보조항을 가지지 않는다.

#### 제17조 지속기간과 탈퇴

1. 본 조약은 무기한이다.
2. 각 당사국은 국가 주권을 행사하면서 조약의 주제와 관련된 특별한 사건들이 그 나라의 최고 이익을 위태롭게 했다고 판단하면 본 조약에서 탈퇴할 권리를 가지도록 한다. 해당국은 보관소에 그 탈퇴의 통보를 하도록 한다. 그런 통보는 그 국가가 자신의 최고 이익을 위태롭게 했다고 간주하는 특별한 사건들에 대한 진술을 포함하도록 한다.
3. 그런 탈퇴는 보관소에 의해 탈퇴 통보의 접수 일로부터 12개월이 지나야 효력을 발생한다. 그러나 12개월의 기간이 만료될 때 탈퇴하는 당사국이 무장 교전의 당사국이면, 그 당사국은 더 이상 무장 교전 당사국이 아닐 때까지 본 조약과 어떠한 추가적 프로토콜 상의 의무들에게도 구속을 계속 받는다.

#### 제18조 다른 협정들과의 관계

본 조약의 이행은 당사국이 당사자가 되는 기존의 국제협정들로서 조약과 상충되지 않은 협정들에 관하여 당사국들이 인수하는 의무사항을 침해하지 않도록 한다.

#### 제19조 보관소

국제연합의 사무총장은 여기서 본 조약의 보관소로 지정된다.

#### 제20조 진본 문서

본 조약의 아랍어, 중국어, 영어, 프랑스어, 러시아어, 스페인어 본문이 동등하게 진본이다.

2017년 7월 7일 뉴욕